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염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- 2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・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- 3. 박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 염◇◇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○○○원을 빌려 주었고, 이자는 연 24%로 하였으며 변제기일은 20○○. ○. ○.로 약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피고 김◇◇와 피고 박◇◇는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 서 명・날인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피고 염◇◇는 20○○. ○○. ○.까지의 이자만을 주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아니하므로,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로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차용증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3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O. O. 의 원고 OO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.** E |
|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| 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
| 비 용 | 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 | |
| 불복절차 및 기 간 |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